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형두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3458
----------	-------

발의연월일 : 2023. 7. 26.

발의자 : 최형두 · 김태호 · 조해진
엄태영 · 이종배 · 배준영
김상훈 · 조명희 · 박성민
홍문표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소벤처기업부는 현행법 제8조의2에 따라 중소기업기술 침해사건에 대한 행정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나, 법원에 의한 행정조사 기록 송부 요구에 대한 규정이 부재하여, 소송 당사자가 행정조사 기록을 소송과정에서 증거로 활용할 수 없음

중소기업 기술보호 수준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중소기업 기술유출 · 탈취로 인한 피해건수는 280건, 피해금액은 2,800 억원에 달하며 75%가 입증자료 부족으로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상황임.

이에 자료 요구의 대상 및 범위 등을 명확히 하여 법원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행정조사 관련 자료를 원활히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고, 증거의 구조적 편재를 해소하는 등 소송상 실체적 진실을 구현하고자 함(안 제8조의5 신설).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5(기록의 송부 등) 법원은 제8조의2에 따른 중소기업 기술침해 행정조사와 관련하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제기된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해당 사건의 기록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1. 사건관계인, 참고인 또는 감정인에 대한 진술조서
2. 당사자가 제출하였거나 현장조사 과정에서 당사자로부터 확보한 기록전체목록
3. 그 밖의 해당 사건 관련 조사 기록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p><u>제8조의5(기록의 송부 등) 법원은</u></p> <p><u>제8조의2에 따른 중소기업 기</u></p> <p><u>술침해 행정조사와 관련하여</u></p> <p><u>「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u></p> <p><u>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u></p> <p><u>라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제기</u></p> <p><u>된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u></p> <p><u>게 다음 각 호의 해당 사건의</u></p> <p><u>기록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u></p> <p>1. 사건관계인, 참고인 또는 감 정인에 대한 진술조사</p> <p>2. 당사자가 제출하였거나 현장 조사 과정에서 당사자로부터 확보한 기록전체목록</p> <p>3. 그 밖의 해당 사건 관련 조 사 기록</p>